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교육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예산안분석시리즈 II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교육위원회 】

2019. 10.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에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 (2019. 10. 17.)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정부는 지난 9월 3일 총수입 482조원, 총지출 513.5조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에 따른 경기 하방위험에 적극 대응하고자 총지출을 전년 대비 43.9조원(9.3%) 증액하는 한편,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중기적으로도 적극적인 재정책대를 계획하고 있어, 내년부터는 통합재정수지가 구조적인 적자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재정의 역할이 확대되는 추세 속에서 개별사업의 효과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점검해야 될 국회의 역할 또한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는 「총괄 분석」, 「위원회별 분석」,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성인지 예산안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괄 분석」은 재정건전성,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중심으로 재정총량에 대한 현황과 분석내용을 수록하였고, 혁신성장·경제활력 제고·포용국가 기반공고화 등 주요 정책 사업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개별사업 단위로 각 부처의 주요 증액 또는 현안사업에 대한 효과성, 필요성 등을 분석하는 한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에서는 보조금·출연금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예산안을 각 기관별로 살펴보았으며, 「성인지 예산서 분석」에서는 성인지 대상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국회 심사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예·결산 심사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이 중 후

차 례

CONTENTS

[교육부]

I. 예산안 개요 / 1

- 1. 현 황 1
-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6
-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9

II. 주요 현안 분석 / 12

- 1. 고등학교 무상교육 사업의 법 개정 추이 반영 필요 등 12
-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법 개정 추이 점검 필요 19

III. 개별 사업 분석 / 23

- 1.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법 개정 추이 반영 필요 등 23
- 2. 대학혁신지원(R&D)의 체계적인 사업추진 필요 29
- 3. 사학연금기금 의무지출의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36
- 4. BK21 플러스 사업의 철저한 사업준비 필요 39
- 5.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의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우선 지원 필요 44
- 6. 교육부 소관 R&D 사업의 사업기간을 고려한 예산 조정 필요 48
- 7.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의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등 51
- 8. 중앙취업지원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 등 안정적 운영 필요 57
- 9.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의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60
- 10. 국립대병원 지원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 반영 필요 63
- 11.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66

- ※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안내 71

부속
표

1

현황

가. 총수입·총지출

교육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하 “예산안”)의 총수입은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2개 기금(사학진흥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으로 구성되며, 총지출은 일반회계, 2개 특별회계(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및 2개 기금(사학진흥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으로 구성된다.

교육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5조 6,694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2,310억원(3.9%) 감소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1,390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16억원, 사학진흥기금 1,802억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5조 3,387억원이다.

[2020년도 예산안 교육부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¹⁾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235,432	160,471	160,471	150,540	△9,931	△6.2
- 일반회계	134,688	149,097	149,097	138,956	△10,141	△6.8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2,653	11,374	11,374	11,584	210	1.8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88,092	0	0	0	0	0
기 금	4,904,848	5,739,869	5,739,869	5,518,842	△221,027	△3.9
- 사학진흥기금	175,995	200,808	200,808	180,191	△20,617	△10.3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4,728,854	5,539,061	5,539,061	5,338,651	△200,410	△3.6
합 계	5,140,280	5,900,340	5,900,340	5,669,382	△230,958	△3.9

주: 1) 기금은 각각 2019년 당초계획안과 9월말 기준 수정계획안을 의미

자료: 교육부

교육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77조 2,466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조 8,910억원(2.5%)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67조 3,567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8,665억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조 7,846억원, 사학진흥기금 2,627억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4조 9,761억원이다.

[2020년도 예산안 교육부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¹⁾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63,919,515	70,235,974	70,324,669	72,007,780	1,683,111	2.4
- 일반회계	59,261,162	65,736,734	65,825,429	67,356,667	1,531,238	2.3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765,636	683,902	683,902	866,499	182,597	26.7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892,717	3,815,338	3,815,338	3,784,614	△30,724	△0.8
기 금	4,635,380	4,680,339	5,030,904	5,238,783	207,879	4.1
- 사학진흥기금	215,798	230,985	230,985	262,687	31,702	13.7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4,419,582	4,449,354	4,799,919	4,976,096	176,177	3.7
합 계	68,554,895	74,916,313	75,355,573	77,246,563	1,890,990	2.5

주: 1) 기금은 각각 2019년 당초계획안과 9월말 기준 수정계획안을 의미
자료: 교육부

나. 세입·세출예산안

교육부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2개 특별회계(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구성된다.

교육부 소관 2020년도 세입예산안은 3조 9,874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404억원(1.0%) 감소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912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16억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조 7,846억원이다.

[2020년도 교육부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74,595	201,106	201,106	191,202	△9,904	△4.9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2,653	11,374	11,374	11,584	210	1.8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980,809	3,815,338	3,815,338	3,784,614	△30,724	△0.8
합 계	4,168,056	4,027,818	4,027,818	3,987,400	△40,418	△1.0

주: 총계 기준

자료: 교육부

교육부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76조 6,010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조 5,645억원(2.1%)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1조 9,499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8,665억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조 7,846억원이다.

[2020년도 교육부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63,970,109	70,448,553	70,537,248	71,949,906	1,412,658	2.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765,636	683,902	683,902	866,499	182,597	26.7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892,717	3,815,338	3,815,338	3,784,614	△30,724	△0.8
합 계	68,628,462	74,947,793	75,036,488	76,601,019	1,564,531	2.1

주: 총계 기준

자료: 교육부

다. 기금운용계획안

교육부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사학진흥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으로 구성된다.

교육부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2조 9,917억원으로 전년 수정계획안 대비 3,519억원(2.8%) 증가하였다. 기금별로는 사학진흥기금 5,605억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12조 4,313억원이다.

[2020년도 교육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2020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사학진흥기금	531,918	529,352	529,352	560,451	31,099	5.9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9,013,744	12,110,432	12,110,432	12,431,254	320,822	2.6
합 계	9,545,662	12,639,784	12,639,784	12,991,705	351,921	2.8

주: 1. 총계 기준

2. 2019년 수정계획안은 9월말 기준

자료: 교육부

라. 재정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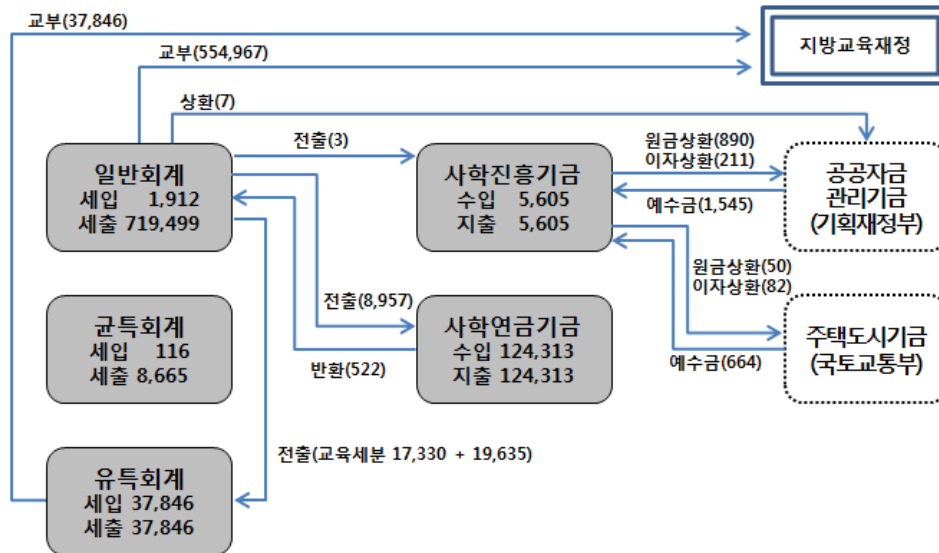
2020년도 예산안의 교육부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의 경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3조 6,965억원, 사학진흥기금으로 3억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으로 8,957억원이 전출되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차관 원금·이자 7억원을 상환한다.

사학진흥기금의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금 1,545억원을 받고, 예수 원금 890억원, 예수 이자 211억원을 상환하며,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예수금 664억원을 받고 예수 원금 50억원, 예수 이자 82억원을 상환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경우 일반회계로 522억원을 반환한다.

[2020년도 교육부 소관 재정흐름도]

(단위: 억원)



주: 총계기준

자료: 교육부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020년도 교육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고등학교 2, 3학년 무상 교육 지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확대 등으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이 증액되었고(2019년 59.4조원 → 2020년 60.3조원), ② 대학혁신지원 사업, BK21 플러스 사업 등을 중심으로 고등교육 예산이 확대되었으며(2019년 10조 1,510원 → 2020년 10조 8,057억원), ③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고졸취업 활성화 지원 등으로 평생·직업교육 부문 예산이 확대되었다(2019년 7,435억원 → 2020년 9,342억원). 또한 ④ 사회연금기금 연금급여의 증가로 공적연금 부문 예산이 확대되었다(2019년 4조 4,494억원 → 2020년 4조 9,761억원).

[2020년 교육부 예산안 부문별 현황]

(백만원, %)

구 분	2019		2020 예산안 (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총지출	74,916,313	75,005,008	77,246,563	2,241,555	3.0
【교육분야】	70,335,251	70,423,946	72,168,818	1,744,872	2.5
■ 유아 및 초·중등교육	59,383,165	59,401,432	60,295,754	894,322	1.5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5,248,823	55,248,823	55,496,675	247,852	0.4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815,338	3,815,338	3,784,614	△30,724	△0.8
(고등학교 무상교육)	0	0	659,406	659,406	순증
■ 고등교육	10,080,600	10,151,028	10,805,692	654,664	6.4
■ 평생·직업교육	743,466	743,466	934,206	190,740	25.7
■ 교육일반	128,020	128,020	133,166	5,146	4.0
【사회복지분야】	4,581,062	4,581,062	5,077,745	496,683	10.8
■ 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	131,708	131,708	101,649	△30,059	△22.8
■ 공적연금	4,449,354	4,449,354	4,976,096	526,742	11.8

자료: 교육부

2020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첫째, 2020년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경우 법 개정을 전제로 예산안이 편성되었으므로 법 개정 추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안(6,594억원, 신규)은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전제로 편성되었으며, 2019년 10월 18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2019년 종료되며, 2020년 예산안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2022년까지 연장하는 법 개정을 전제로 편성되었으며, 2019년 10월 18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2020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안은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교부율 인상(20.46 → 20.79%)을 전제로 편성되었다.

둘째, 2020년 고등교육 부문의 예산안 증가율은 6.4%로 교육부 총지출 증가율 3.0%보다 3.4%p 높은 수준이므로 사업 준비를 보완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대학혁신지원(R&D)의 2020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2,347억원(41.3%) 증가한 8,035억원 규모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대학재정지원 사업이므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대학의 자율개선을 지원하는 동시에, 대학 정원 대비 입학생 미달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대학 구조조정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BK21 플러스 사업은 2020년부터 4단계를 출범할 계획이며 4단계는 3단계에 비해 연 사업비가 1,360억원(49.8%) 증가한 4,080억원 규모로, 4단계 사업의 예산 증액 규모, 인재양성 방향 변경, 내역사업의 신규 도입 등을 고려할 때 기획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성과를 담보하기 위한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셋째, 교육부는 고졸취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780 → 1,107억원, 41.9% 증),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지원(18억원, 신규),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23 → 205억원, 791.3% 증) 등의 사업을 확대하였다. 동 사업은 지원대상이 확대되거나 지원단가가 인상된 만큼 연도 내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지원단가 인상의 취업연계 효과, 현장실습의 안전관리 강화 등 사업효과성에 대한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공적연금 부문의 예산안 증가율이 2020년 11.8%로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의무지출 추계 기법이 부재하므로, 공적연금의 수입 및 지출 규모,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서 의무지출 추계 기법을 조속히 개발하여 추계의 정확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의 2020년도 신규사업은 총 11개 사업, 8,513억원 규모이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사업은 고등학교 2·3학년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47.5%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대학진로탐색학점제 지원 사업은 학생이 자기주도적 진로탐색 활동을 설계·수행하고 이를 평가하여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확산을 위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학 평생교육원 강좌 개설 지원 사업은 대학 내 강의 기회를 얻지 못한 기존 강사 및 신진연구자 등에게 대학 평생교육원에서의 강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간 협력체제, 플랫폼 운영, 모니터링 등 직업계고 취업 지원을 위한 국가차원의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이고,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 사업은 단위학교에서 졸업생 이력관리, 미취업·경력단절자 대상 취업연계, 취업자 근속 및 후진학 지원 등 적극적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교육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 (11개)	국립학교인건비	135,385
	국립학교기본경비	22,780
	고등학교무상교육	659,406
	폐교대학종합관리사업	447
	대학진로탐색학점제지원	409
	대학평생교육원강좌개설지원	4,912
	중앙취업지원센터운영지원	1,800
	현장실습기업현장교육지원	20,500
	고졸자후속관리지원모델개발	2,050
	사회정책조정역량강화사업	650
	사회복무요원운영지원	2,981
합 계		851,320

주: 세부사업은 해당연도에 처음으로 예산이 편성된 사업, 다른 사업과 통폐합된 사업, 내역사업이 분리되어 세부사업으로 편성된 사업 등을 포함

자료: 교육부

2020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BK21 플러스 사업, 대학강사 처우개선, (전문)대학혁신지원(R&D), 산학협력력 고도화 지원 등이 있다.

① BK21 플러스 사업은 인력양성 규모 확대 및 연구장학금 지원단가 인상, 대학원 혁신지원비 신설에 따라 예산이 증액되었고, ② 대학강사 처우개선 사업은 대학강사 방학 중 임금(2개 학기분) 및 퇴직금 지원으로 예산이 증액되었다. ③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은 지원대학수 증가 및 지원단가 인상으로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④ 산학협력력 고도화 지원 사업도 지원단가 인상(42억원 → 49억원)으로 예산이 증액되었다.

[교육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19 ¹⁾		2020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26개)	국립대학부설특수학교설립	2,702	2,702	20,679	17,977	665.3
	특수교육내실화기반구축	5,974	5,974	9,731	3,757	62.9
	특수교육정보화지원(정보화)	742	742	975	233	31.4
	보통교부금	53,682,280	53,682,280	53,935,624	253,344	0.5
	고등교육의국제화지원	935	935	1,335	400	42.8
	BK21플러스사업(R&D)	296,732	296,732	383,983	87,251	29.4
	사립대학강사처우개선	15,233	15,233	42,897	27,664	181.6
	대학혁신지원(R&D)	568,755	568,755	803,452	234,697	41.3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R&D)	217,669	217,669	337,366	119,697	55.0
	한국장학재단출연	227,414	227,414	243,079	15,665	6.9
	국립대학인건비	1,620,392	1,620,392	1,697,731	77,339	4.8
	국립대학강사처우개선	119,444	119,444	132,862	13,418	11.2
	국립대학실험실습기자재확충	53,532	84,960	121,679	36,719	43.2
	국립대학시설확충	609,271	620,271	695,590	75,319	12.1
	국립대학노후선박건조 및 승선실습지원	42,427	42,427	59,029	16,602	39.1
	서울대학교출연지원	457,620	457,620	487,365	29,745	6.5
	국립대병원지원	63,147	63,147	73,737	10,590	16.8
	국가평생교육통계구축	1,044	1,044	1,421	377	36.1
	국가장애인평생교육 진흥센터운영	3,532	3,532	4,658	1,126	31.9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19 ¹⁾		2020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평생교육바우처지원	2,509	2,509	3,625	1,116	44.5
	고교취업연계장려금지원	78,000	78,000	110,700	32,700	41.9
	한국어능력시험개선	208	208	2,824	2,616	1,257.7
	교육기관졸업자취업통계조사	1,577	1,577	2,379	802	50.9
	미래교육환경대비교육 콘텐츠진흥육성	1,670	1,670	2,920	1,250	74.9
	사회정책협력관 기본경비(총액비대상)	364	364	712	348	95.6
	행정업무정보화지원(정보화)	1,835	1,835	3,001	1,166	63.5
국가균형 발전특별 회계 (2개)	산학협력고도화지원(R&D)	292,515	292,515	368,946	76,431	26.1
	전문대학혁신지원(R&D)	290,786	290,786	390,786	100,000	34.4
사학진흥 기금 (2개)	사립학교교육환경개선자금융자	95,324	95,324	122,000	26,676	28.0
	사립대학강사처우개선(융자)	6,500	6,500	18,127	11,627	178.9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기금 (2개)	서울회관재건축	12,265	12,265	29,713	17,448	142.3
	연금급여	2,766,929	2,920,434	3,136,410	215,976	7.4

주: 1) 기금은 각각 2019년 당초계획안과 9월말 기준 수정계획안을 의미

1. 주요 증액사업은 2019년도 추경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

자료: 교육부

II

주요 현안 분석

1

고등학교 무상교육 사업의 법 개정 추이 반영 필요 등

가. 현 황

고등학교 무상교육¹⁾은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를 지원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47.5%)를 시·도교육청에 증액교부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0년도 신규사업으로 예산안은 6,594억원 규모이다.

[2020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고등학교 무상교육	0	0	0	659,406	659,406	순증

자료: 교육부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2019년 4월 9일 당·정·청 협의로 확정·발표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에 따른 것으로, 지원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이며,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다. 정부는 2019년 2학기 고3부터 시작하여 2020년 고2·3학년으로 확대하고 2021년 전학년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재원부담은 2020~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국가(증액교부금),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가 각각 총 소요액의 47.5%, 47.5%, 5%를 부담하며, 2025년 이후의 재원부담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성은 예산분석관(sekim06@assembly.go.kr, 788-4634)

1) 코드: 일반회계 1031-306

[정부 발표 고등학교 무상교육 추진 방안]

■ (지원항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 (대상학교) 초·중·고등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
■ (시행방안) '19년 2학기 고3부터 시작→ '20년 고2·3학년→ '21년 전학년 완성
■ (재원분담) '20~'24년까지 국가(중액교부금)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총 소요액의 47.5%, 일반지자체 5% 부담

자료: 교육부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분담은 2019년은 시·도교육청이 부담²⁾하며 2020~2024년까지 국가(중액교부금)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총 소요액의 47.5%를 부담하며 지자체가 5%를 부담한다는 계획이다. 2020년 고등학교 2학년 및 3학년의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총소요액은 1조 3,882억원이며, 이를 국가(중액교부금)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씩 6,594억원을 부담하여 나머지 5%인 694억원을 지자체가 부담한다. 전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2021년에는 1조 9,951억원의 총비용이 소요되며, 이중 국가, 시도교육청, 지자체가 각각 9,466억원, 9,466억원, 1,019억원을 부담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의 재원 분담 계획]

	총 액	국 가	시도교육청	지자체
2020년 (2·3학년)	총소요액: 1조 3,882억원 (100%)	6,594억원 (47.5%)	6,594억원 (47.5%)	694억원 (5.0%)
	- 기존지원금: 5,273억원	987억원	3,592억원	694억원
	- 추가소요액: 8,609억원	5,607억원	3,002억원	-
2021년 (전학년)	총소요액: 1조 9,951억원 (100%)	9,466억원 (47.5%)	9,466억원 (47.5%)	1,019억원 (5.0%)
	- 기존지원금: 7,888억원	1,481억원	5,388억원	1,019억원
	- 추가소요액: 1조 2,063억원	7,985억원	4,078억원	-

자료: 교육부

2) 17개 시·도교육청은 2019년 2학기(3학년) 고교무상교육 추경예산을 2,357억원 편성하였다.

다만, 기존 고등학교 학비 지원사업은 취약계층이나 공무원에 대한 자녀학비를 지원하는 교육급여,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지원 등 6개 사업(2017년 결산, 7,888억원)으로, 이를 제외한 추가 소요액은 2020년 8,609억원, 2021년 1조 2,063억원 규모이다. 추가소요 부담을 보면, 2020년 국가 5,607억원, 시·도교육청 3,002억원이며, 2021년 국가 7,985억원, 시도교육청 4,078억원 규모이다.³⁾

나. 분석의견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안에 대해 다음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안은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전제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검토 시 법 개정 추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020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안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근거로 편성되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근거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사항으로 2020년 2, 3학년, 2021년 1, 2, 3학년 시행을 규정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고지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사항으로 동 개정안은 국고지원을 위한 증액교부금을 2020~2024년 동안 한시적으로 신설·운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증액교부금 규모를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 총소요액의 47.5%로 명시하고 있다.

3) [기존 고교 학비 지원 사업 현황: 2017년 결산]

(단위: 억원)

구분	지원항목	재원부담주체			
		국가	지자체	교육청	합계
교육급여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572	178	752	1,502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	2,082	2,082
한부모가족지원	입학금, 수업료	-	28	81	109
특성화고 장학금	입학금, 수업료	-	-	1,948	1,948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입학금, 수업료	-	225	-	225
공무원 자녀학비 보조수당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909	588	525	2,022
합계		1,481	1,019	5,388	7,888

자료: 교육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법률 개정안 현황]

	내용	비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2020년 2, 3학년, 2021년 1, 2, 3학년	2019년 10월 18일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 국고지원을 위한 증액교부금 신설 - 총소요액 대비 증액교부금 비율(47.5%)을 법문에 명시 - 한시적 국고지원(2020~2024년) 명시	

또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⁴⁾이며, 교육부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8호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⁵⁾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구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으나 기획재정부는 관련법 개정안의 국회 미통과로 ‘보류’를 통보하였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2019년 9월 24일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되었으며, 2019년 10월 18일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지원 근거, 재원조달 방식(증액교부금 신설 및 국고지원 비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 등이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예산안 검토시 관련법 개정 추이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4)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1. ~ 3. (생략)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5)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 7. (생략)

8.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둘째,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은 지속적으로 재정소요가 발생하는 의무지출이므로, 한시법 종료 이후에는 지방교육재정 여건 및 제도 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속가능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초·중등교육법」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의무지출 방식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의무지출은 지속적으로 재정이 소요되는 지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하는 재원조달은 2020~2024년 동안 유효한 한시적인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국가재정운용의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한 재원조달 방안 검토 시 다음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먼저, 증액교부금의 도입 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증액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할 수 있는 항목으로 1991년 신설되어 운영되어 오다가, 2005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단순화하여 전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를 쉽게 파악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폐지한 항목이다.⁶⁾

그러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재원분담 논란으로 2017년 누리과정을 위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신설·운영되는 상황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증액교부금이 도입될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가 복잡해져 시·도교육청으로 이전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다.

참고로 2018년 예산안 심의에서 국회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학년별로 단계적 도입 예정인 고교무상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원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의결한 바 있다.⁷⁾⁸⁾

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보통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그 부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통교부금을 총액으로 교부한다.

7) 정부는 2019년 이후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 지원은 2018년 예산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누리과정 지원단가는 2018년 수준을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집행단가 인상은 지방교육재정이 부담하며 지원소요 산정시 지원대상 아동의 수는 각 년도 지원대상 아동수를 적용한다. 또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학년별로 단계적 도입 예정인 고교무상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원으로 추진한다.

8) 여기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으로 볼 수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2004		2005~2016	2017~2019	2020~2024(정부안)
보통 교부금	경상교부금	보통교부금	보통교부금	보통교부금
	보급교부금			
	증액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특별교부금		특별교부금	특별교부금	특별교부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누리과정)

증액교부금
(고교 무상교육)

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2020~2022년 한시적으로 운용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다음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이 교육부, 시·도교육청, 지자체 간 한시적인 재원분담으로 결정된 것은 학령인구 감소를 근거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의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교육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으며, 지방교육재정의 적정 규모에 대한 엄밀한 검토가 향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에 연동(내국세의 20.46%)되어 있어 경제규모 확대에 따라 증가 추세이며 저출산의 영향으로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학령인구 1인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0년 442만원에서 2018년 922만원으로 연평균 9.6% 증가하였으며,⁹⁾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이월 및 불용이 연례적으로 발생¹⁰⁾하고 있다.

9)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인상(△5.1조원)과 법인세 감소(△14.8조원) 등으로 인한 내국세 감소(△4.1조원)(반면, 교육세는 3,299억원 증가)로 2020년에 2,479억원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는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9년 55.2조원, 2020년 55.5조원, 2021년 58.1조원, 2022년 61.4조원, 2023년 65.9조원으로 연평균 4.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0) 2018년 이월액 4조 8,858억원(시설비 이월액 4조 5,630억원), 불용액 1조 8,442억원 규모(시설비 6,735억원, 인건비 5,471억원 등)

따라서 추가적인 재원이 소요되는 정책 및 사업 추진 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교육재정이 달성해야 하는 목표 및 중장기 지방교육재정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교육재정의 집행상 비효율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점검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재정소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의무지출임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지방교육재정 여건 및 제도 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지방교육재정교부금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역 간 균형 있는 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는 제도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지역현안, 재난안전관리, 국가시책)으로 구성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내국세 등에 연동되어 결정되며, 보통교부금은 ‘내국세×20.46%×97%+교육세 일부(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분 제외²⁾)’이다. 또한 특별교부금은 ‘내국세×20.46%×3%’이며 지역현안특별교부금(30%),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10%), 국가시책특별교부금(60%)의 3가지 용도로 교부된다.

2020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대비 2,478억원(0.5%) 증가한 55조 4,967억원이다. 보통교부금은 전년대비 2,533억원(0.5%) 증가한 53조 9,356억원이며, 특별교부금은 전년대비 55억원(0.4%) 감소한 1조 5,611억원 규모이다.

[2020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9,540,693	55,248,823	55,248,823	55,496,675	247,852	0.5
- 보통교부금	48,156,883	53,682,280	53,682,280	53,935,624	253,344	0.5
- 특별교부금	1,383,810	1,566,543	1,566,543	1,561,051	△5,492	△0.4
지역현안	415,143	469,963	469,963	468,315	△1,648	△0.4
재난안전관리	138,381	156,654	156,654	156,105	△549	△0.4
국가시책	830,286	939,926	939,926	936,631	△3,295	△0.4

자료: 교육부

김성은 예산분석관(sekim06@assembly.go.kr, 788-4634)

1) 코드: 일반회계 1500

2) 2017~2019년 3년 한시법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제정으로 누리과정 지원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유치원 교육비는 보통교부금 중 교육세로 지원되고 있으며, 동 법률을 2020~2022년 3년 연장 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인상(△5.1조원)과 법인세 감소(△14.8조원) 등으로 인한 내국세 감소(△4.1조원)와 교육세 증가를 반영하여 2020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2020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안 산출에 제시한 교부율은 20.46%로 현행 수준이다.

[2020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안 산출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예산	2020(안)
□ 보통교부금	53,682,280	53,935,624
- 내국세분	50,651,595 (내국세 255,220,620 × 20.46% × 97%)	50,473,980 (내국세 250,288,750 × 20.46% × 97%)
- 교육세분	3,030,685 (교육세 전액 4,864,800 - 교육세분 특별회계 전출분 1,834,115)	3,461,644 (교육세 전액 5,194,650 - 교육세분 특별회계 전출분 1,733,006)
□ 특별교부금	1,566,543 (내국세 255,220,620 × 20.46% × 3%)	1,561,051 (내국세 250,288,750 × 20.46% × 3%)
- 지역현안	469,963	468,315
- 재난안전관리	156,654	156,105
- 국가시책	939,926	936,631

자료: 교육부

나. 분석의견

정부는 2020년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교부율 인상(20.46 → 20.79%)을 전제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므로 예산안 심의 시 법 개정 추이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20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전년 수준(20.46%)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제시하였지만 실제 2020년 교부금 예산안(55.5조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2019년 내국세 총액의 20.46%에서 2020년 20.79%로 인상하는 것을 전제로 편성하였다.

[2020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안]

(단위: 백만원)

	국회 보고	실제 편성
규모	55,496,675	55,496,675
교부율	내국세의 20.46%	내국세의 20.79%
관련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 - 교부율 20.4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미제출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정부는 ‘강력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지방재정분권 추진 방안(2018. 10. 30.,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1%인 지방소비세율을 2019년 15%(+4%p)로 인상 완료하였으며, 2020년 21%(+6%p)로 인상을 추진 중(개정안 제출)이다. 그리고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내국세 감소와 그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2018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019년 20.46%로 인상하였으며, 2020년 예산안을 20.79% 인상을 전제로 편성하였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³⁾ 규정사항으로 교부율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2019년 10월 18일 현재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2020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안 규모(55.5조원)는 20.79%의 교부율을 적용한 수준이지만, 교육부가 2020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안 산출에 제시한 교부율은 20.46%로 교부금 규모와 교부율이 불일치하며,⁴⁾ 교부율 20.46%를 적용할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② 교부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46

2. 해당 연도의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③ 보통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7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4) 다만, 「2020년 세입세출안 각목명세서」에 따르면 내국세의 20.79%의 교부율이 적용된 것으로 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정부 예산안(55.5조원) 보다 8,260억원 작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인상률 및 근거에 대해 명확하게 정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과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2020년은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 및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증액교부금이 논의되는 해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도출하고 국회에 정확하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부율 인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사항으로 지방소비세 인상 및 교부율 인상 등 관련 법안 개정 추이 등을 고려하여 교부금 예산안을 심의할 필요가 있다.

타났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국회 제출 자료는 현행 교부율(20.46%)을 유지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각목명세서 상 수치에 대한 수정이 누락된 것이며, 향후 교부율 인상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국회에 교부율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 불일치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III

개별 사업 분석

1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법 개정 추이 반영 필요 등

가. 현 황

정부는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을 위해 3년 한시법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제정, 2016.12.20.)에 근거하여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특별회계 세입은 일반회계전입금, 기타경상이전수입으로 구성되며, 이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누리과정(만 3~5세)에 대한 유아교육비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인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사업¹⁾으로 지출된다.

[2020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세입	일반회계전입금(91-911)	3,892,717	3,815,338	3,815,338	3,696,522	△118,816	△3.1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88,092	0	0	0	0	0
	전년도세계잉여금(89-893)	0	0	0	88,092	88,092	순증
	합 계	3,980,809	3,815,338	3,815,338	3,784,614	△30,724	△0.8
세출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1601-300)	3,892,717	3,815,338	3,815,338	3,784,614	△30,724	△0.8

자료: 교육부

누리과정의 경우 2년간('15~'16)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을 계기로 '17~'19까지 3년간은 교육세 일부와 국고를 재원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7년에는 어린이집 지원분에 대해 일부(8,600억원) 국고로 지원하였으며 2018년부터는 전액(2조 586억원)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 2019년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및 운영비(713억원)를 제외한 어린이집 소요분 전액(1

김성은 예산분석관(sekim06@assembly.go.kr, 788-4634)

1) 코드: 일반회계 1601-300

조 9,812억원)을 국고 지원하였으며,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키를 교육세에서 지원하였다. 2020년 예산안에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키 및 운영비(856억원)를 포함한 어린이집 소요분 전액을 국고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하였다.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규모]

(단위: 억원)

재원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입	교육청(교부금)	39,455	40,420	-	-	-	-
	특별회계	-	-	39,409	38,927	38,153	37,846
	- 교육세	-	-	30,809	18,341	18,341	17,330
	유치원 교육비	-	-	30,809	18,341	17,628	17,330
	어린이집 처우개선키 및 운영비	-	-	0	0	713	0
	- 국고	-	-	8,600	20,586	19,812	19,635
	- 전년도세계잉여금	-	-	-	-	-	881
세출	유치원	18,663	19,873	18,533	18,341	17,628	17,518
	어린이집	20,792	20,547	20,876	20,586	20,525	20,328
	보육료			0	0	19,812	19,471
	처우개선키 및 운영비			0	0	713	856
	세출 합계	39,455	40,420	39,409	38,927	38,153	37,846

주: 세입 중 전년도세계잉여금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누어서 지출됨

자료: 교육부

나. 분석의견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 대해 다음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2019년 종료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2022년까지 연장하는 법 개정을 전제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심의시 법 개정 여부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매년 반복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문제 해결을 위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하여 누리과정 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니라 해당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한 어린이집 지원의 적절성 논란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국회가 이를 의결함에 따라 2017년 예산안 의결

과 함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2017~2019년 3년 한시 회계로 설치되어²⁾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 연장 여부 등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2020년 예산안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률안³⁾을 근거로 편성되었다. 현재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이 2019년 8월 26일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되어 2019년 10월 18일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연장 운영은 법 개정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2020년 예산안 심의 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 추이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한시법이 종료되는 2022년 이후에는 누리과정 재원분담 및 지원체계에 대한 지속가능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국고와 지방비 간 재원분담 논란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으로 일단락되었지만, 2017~2019년 3년 한시법으로 제정되었으며 2020년 예산안도 2020~2022년 3년간 한시적으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연장 운영하는 내용을 근거로 편성되었다.

누리과정 재원분담 논란은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학령인구 감소를 근거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의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우리나라 교육의 질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교육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누리과정 재원분담에 대한 논의가 최초로 진행되었던 2014~2015년에는 경기 침체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2013년 41.1조원 → 2014년 40.9조원 → 2015년 39.4조원)하였지만, 내국세 규모에 연동되어 결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규모가 확대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증가추세(2010~2018년 연평균 증가율 6.2%)에 있으며, 학령인구의 감소로 학생 1인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2018년 920만원으로 2010년 441만원의 2배 이상이며, 향후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인당 지방교육재정 여건은 더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⁴⁾

2)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3) 의안번호, 제안 2019. 5. 30.

따라서 학령인구 감소 등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여건도 변하고 있고 있으므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의 중장기적인 합리적인 운용방안을 수립하여 누리과정에 대한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누리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⁵⁾

셋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지원 내역은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등 관련법에 따른 누리과정 무상교육 비용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항목을 일부 포함하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누리과정 무상지원에 대한 근거, 무상지원 비용 등은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규정되어 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무상보육 지원 근거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⁶⁾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2조⁷⁾이며, 유치원 누리과정 무상교육 지원 근거 규정은 「유아교육법」 제24조⁸⁾이다.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 및 유아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고시에 따라 결정되며, 2019년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

4)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에 따른 유아(3~5세아) 추이는 2017년 136만명에서 2021년 115만명, 2025년 87만명, 2067년 64만명으로 감소한다.

5) 국회의 2018년 예산안 심의에서 ‘정부는 2019년 이후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 지원은 2018년 예산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누리과정 지원단가는 2018년 수준을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집행단가 인상은 지방교육재정이 부담하며 지원소요 산정시 지원대상 아동의 수는 각 년도 지원대상 아동수를 적용한다’는 부대의견이 의결되었다.

6)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생략)

7)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2조(무상보육의 내용 및 범위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유아(영유아인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 영유아를 포함한다) 무상보육은 다음 각 호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1.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영유아: 어린이집에서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 중 보건 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이하 "공통과정"이라 한다)을 제공받는 경우. 다만, 1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만 3세가 된 영유아로서 어린이집에서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생략)

8)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 ①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無償)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제4항의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시에 따르면 국공립유치원 6만원,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22만원이다. 또한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실시 비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⁹⁾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¹⁰⁾에 근거해 한시적으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

그러나 법과 고시에 따른 누리과정 소요 비용 이외에 방과후과정비¹¹⁾, 어린이집 처우개선비 및 운영비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부담하고 있어 법 취지와 일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2020년 예산안에 따른 국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 방과후 과정비는 3,896억원(재원: 교육세)이며,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 및 학급운영비는 5,556억원 규모(재원: 국고)이다.

[2019년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

구분	연령	생년월일	지원액(1인당, 월)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누리과정(유아학비·보육료)	만5세	2013. 1. 1. ~ 2013. 12. 31.	60,000원	220,000원	220,000원
	만4세	2014. 1. 1. ~ 2014. 12. 31.			
	만3세	2015. 1. 1. ~ 2016. 2. 28.			

9)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무상보육 실시 비용)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22조제1항제1호의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 다만,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까지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 (생략)

10)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4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공통 교육·보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원금 (생략)

- 11) 교육부는 이에 대해 「유아교육법」에 따라 방과 후 과정은 누리과정 참여 유아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유치원 교육활동으로서 저출산 시대 학부모의 돌봄 수요를 고려하여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내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누리 과정비와 방과후 과정비 모두 ‘유아교육비용 지원’을 통한 학부모 부담 경감이라는 측면에서 그 목적과 취지가 동일하므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으며 예산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타당한 면이 있다고 설명한다.

[2020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예산안]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재원	교육세		국고
누리과정 비용부담 규정 항목	유아학비 6만원	유아학비 22만원	보육료 22만원
미규정 지원 항목	- 방과후과정비 5만원 - 총소요액 81,213백만원	- 방과후과정비 7만원 - 총소요액 308,379백만원	- 사립유치원과 지원단가를 맞추기 위해 7만원 추가 지원(교사처우개선비와 운영비로 집행) - 총소요액: 469,998백만원
			- 누리교사 처우개선비 30,000백만원 - 운영비 54,654백만원

참고로, 2019년에는 어린이집 누리교사 처우개선비 및 운영비(713억원)가 교육세를 재원으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 편성¹²⁾되었으나, 시·도교육청은 2019년 어린이집 누리교사 처우개선비 및 운영비를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있다¹³⁾.

현행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지원 내역은 누리과정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누리과정 무상교육 비용에 일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누리과정 지원제도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누리과정 비용과 관련법이 정합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2) 2019년 어린이집 누리교사 처우개선 및 운영비(713억원)는 국회에서 증액된 사업으로 재원조달은 교육세로 이루어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 편성되었다.

13) 시·도교육감 어린이집 누리교사 처우개선비 미편성 및 교육세 부담 반대 성명 발표(19.1.17)로, 처우개선비 등 713억원의 교육세 부담 반대 및 편성 거부 및 보건복지부 국고로 편성·지자체 직접 지원을 촉구하였다. 이는 국고가 아닌 교육세에서의 부담은 시·도 교육청으로 배분돼 교육을 위해 집행 되어야 할 보통교부금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가. 현 황

대학혁신지원(R&D)¹⁾은 대학의 자율 혁신을 통해 혁신 성장의 토대가 되는 미래형 창의 인재 양성 체제 구축을 위해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지원하는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2,347억원이 증액된 8,035억원이 편성되었다.

[2020년도 대학혁신지원(R&D)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대학혁신지원(R&D)	444,675	568,755	568,755	803,452	234,697	41.3

자료: 교육부

교육부는 2019년 대학의 자율성 강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수의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을 대학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계획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일반재정 지원사업으로 통합·개편하고 「2018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와 재정지원을 연계하였다. 교육부 소관 주요 재정지원사업을 2019년 3개 유형(국립대학, 일반재정지원, 특수목적지원) 및 4개 목적(국립대학육성, 대학혁신지원, 산학협력, 연구)으로 개편하였다. 이 중 대학혁신지원(R&D)은 사회수요맞춤형인재양성사업(R&D),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ACE)(R&D), 지방대학육성사업(R&D)의 3개의 특수목적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한 일반재정지원사업이다.

김성은 예산분석관(sekim06@assembly.go.kr, 788-4634)

1) 코드: 일반회계 2238-312

[교육부 주요 대학 재정지원사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2018 예산		2019 예산				2020 예산안		
세부사업명	추경	유형	목적	세부사업명	추경	본예산	증감	증감율
국립대학혁신사업	80,000	국립대학 지원	국립대학 육성지원	국립대학 육성사업	150,400	150,000	△400	△0.3
사회수요맞춤형 인재양성사업(R&D)	234,918	일반재정 지원	대학혁신 지원	대학혁신지원 (R&D)	568,755	803,452	234,697	41.3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 (ACE)(R&D)	73,959							
지방대학육성사업(R&D) - 지방대학특성화사업(CK)	135,798 ¹⁾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250,764			전문대학 혁신지원	290,786	390,786	100,000	34.4
산학협력고도화지원	229,168	특수목적 지원	산학 협력	산학협력 고도화지원	292,515 ²⁾	368,946	76,413	26.1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지원	78,680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지원	93,787	99,287	5,500	5.9
BK21플러스사업	297,707		연구	BK21 플러스사업	296,732	383,983	87,251	29.4
합계	1,380,994	합계			1,692,975	2,196,454	503,479	29.7

주 1) 지방대학육성사업의 내역사업은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CK)'과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이며,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에 따라 지방대학특성화사업(CK)은 대학혁신지원(R&D) 사업으로,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은 산학협력 고도화 지원 사업으로 통폐합

2) 지역선도대학육성 사업 2019년 예산(100억원) 포함

자료: 교육부

2020년 대학혁신지원(R&D) 예산안의 특징은 I유형(자율협약형)과 II유형(역량강화형) 외에 III유형(지역혁신형)을 신설하였다는 점이다. III유형(지역혁신형)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대학 위기 극복 등을 위해 추진되었다. 교육부는 지역대학과 지자체가 컨소시엄을 통해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발전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추진하도록 지원하며, 3개 지역을 선정하여 지역혁신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020년 유형별 대학혁신지원사업 개요]

유형	대상	지원 조건	지원 규모	
			2019	2020
I 유형 (자율협약형)	자율개선대학 (전체)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자율 혁신	- 131교 - 5,350억원	- 131교 - 6,540억원
II 유형 (역량강화형)	역량강화대학 (일부)	- 정원감축 및 구조조정 - 대학 특성화 전략	- 12교 - 296억원	- 12교 - 362억원
III유형 (지역혁신형)	지역대학	- 지역대학이 지자체 와 컨소시엄을 구성 - 지역실정에 맞는 발전 계획의 자율적 수립·추진을 통한 지역 혁신	-	1,074억원 지역별 주관 대학 3개교를 대상으로 평 균 358억원

나. 분석의견

대학혁신지원(R&D) 사업에 대해 다음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대학혁신지원(R&D)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대학의 자율개선을 지원하는 동시에, 대학 정원 대비 입학생 미달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대학 혁신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 대학 정원이 유지될 경우, 2020학년도에 대학 정원 대비 입학생 미달이 발생하며 2024학년도에 약 12.4만명이 미달²⁾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 정원 대비 입학생 부족 현상 발생으로 지역대학·전문대학의 위기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등록금 동결 등으로 인한 대학 재정의 어려움 해소와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지원을 확대하였다고 예산안 편성 방향을 설명하고 있으며, 대학혁신지원(R&D)은 2019년에 선정된 143개 대학에 대해 2019~2021년 3년간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예산안은 전년 보다 2,347억원(41.3%) 증가한 8,035억원 규모이다.

2) '18학년도 대학 정원: 497,218명, '24학년도입학자원(추정): 373,476명

학령인구 감소, 등록금 동결 등으로 인한 대학 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대학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정부가 등록금 동결 정책을 유지하면서 학령인구 감소와 4차 산업혁명 등 정책여건에 대응한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이 우수한 대학 육성, 대학 구조조정 등에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학재정지원 예산 확대가 중장기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수행되지 않을 경우 한계대학 생존을 지원함으로써 필요한 혁신의 지연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학혁신지원(R&D)의 2020년 예산안은 전년 보다 2,347억원(41.3%) 증가한 8,035억원 규모로 교육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대학재정지원 사업이므로, 중기재정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운용하여 효율적인 사업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2020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사전계획 수립 시 대학혁신지원(R&D)의 중기재정계획을 크게 변경하였다. I유형 학교당 지원단가가 '18~'22 중기재정계획 상 30.72~40.84억원이었으나 '19~'23 중기재정계획에서는 40.84~72.04억원으로 증가되어, '18~'22 중기재정계획 상 최고 지원단가가 '19~'23 중기재정계획에서는 최저 지원단가로 변경되었다.

['18 ~ '22 중기재정계획과 '19 ~ '23 중기재정계획 비교]

(단위: 억원)

	'18	'19	'20	'21	'22	'23	비고
'18~'22	4,446	5,687 · I유형 530 · II유형 296	4,224 · I유형 4024 · II유형 169	4,224 · I유형 4024 · II유형 169	4,224 · I유형 4024 · II유형 169	-	· 학교당 지원 I유형 30.72~40.84 II유형 14.11~24.67
'19~'23	-	5,687 · I유형 5,350 · II유형 296	10,000 · I유형 6,595 · II유형 363 · III유형 2,990	11,000 · I유형 7,541 · II유형 417 · III유형 2,990	12,000 · I유형 8,488 · II유형 469 · III유형 2,990	13,000 · I유형 9,436 · II유형 522 · III유형 2,990	· 학교당 지원 I유형 40.84~72.04 II유형 24.67~43.50 III유형 권역당 747.5

자료: 교육부

그 결과 「2019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에서 수립한 대학의 자율혁신 지원의 성과제고를 위한 성과평가 인센티브³⁾가 적절히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 당초 계획의 성과평가 인센티브는 최하위 등급(C등급)을 받은 대학에 대해서는 전년 보다 재정지원을 감액하고 성과가 높은 대학에 대해서는 전년 보다 재정지원을 증액함으로써 대학의 자율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설계되었다.⁴⁾ 그러나 2020년 예산이 증가하면서 C등급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액이 전년과 유사하거나 높아져 성과평가 인센티브 도입의 효과가 당초 계획한 것보다 미흡할 우려가 있다.⁵⁾

교육부는 이에 대해 2020년 예산 확정 규모에 따라 I유형의 성과평가 인센티브 비중을 당초 계획 20%에서 최대 30% 수준으로 조정하여 미흡 등급(C등급) 대학은 2019년에 비해 낮은 수준의 사업비가 지원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등록금 동결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학령인구 감소와 4차 산업혁명 등 정책여건에 대응한 대학의 재정적인 어려움과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서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대학의 자율적인 성과 개선에 따라 재정이 지원된다는 점과 성과 인센티브 체계에 대한 안정적인 방향을 대학에 제시하고 제시한 방향대로 실제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

3) [2019년 대학혁신지원 기본계획의 2020~2021년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급 방안]

	I유형	II유형
성과평가 인센티브 산정방식	- 총 사업비의 20% -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누어 C등급은 인센티브 미지급	- 하위 대학(C등급, 전체의 30%)의 사업비 일부(10% 내외)를 감액하여 상위 대학(A등급, 40%)의 인센티브로 지급

자료: 교육부

4) 당초 성과관리 계획에 따르면 I유형의 성과평가 인센티브 산정은 총 사업비의 20%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누어 C등급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미지급하는 방식이다. 즉 '18~'22 중기재정계획 상 I유형의 경우 총사업비(4,024억원) 중 805억원(20%)이 성과평가 인센티브로 지원되고 3,129억원이 포물러 방식으로 지원될 경우, 포물러 방식으로 지원되는 학교당 지원액은 24.57억원으로 2019년 40.84억원보다 감소하며 나머지 성과평가 인센티브의 차등지원으로 C등급은 전년 보다 작은 수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II유형의 경우는 C등급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감액한다고 기본계획에 명시되어 있다.

5) 2020년에도 성과평가 인센티브가 20%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I유형의 경우 총사업비(6,540억원) 중 1,308억원이 성과평가 인센티브로 지원되고 5,232억원이 포물러 방식으로 지원된다. 2020년 포물러 방식으로 지원되는 학교당 지원액은 39.94억원으로 2019년 40.84억원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므로 2020년에는 성과평가와 관계없이 모든 대학이 2019년과 유사한 수준의 예산 지원을 받게 된다. II유형의 경우도 2020년 인센티브를 제외한 지원단가는 29.25억원으로 성과평가와 무관하게 2019년 학교당 지원단가(24.67억원) 보다 높은 수준의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대학혁신지원(R&D) 사업에 대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중장기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대학의 자율개선을 지원하는 동시에, 대학 정원 대비 입학생 미달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대학 혁신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 III유형(지역혁신형)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III유형(지역혁신형)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대학 위기 극복 등을 위하여 지자체와 지역대학이 컨소시엄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발전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추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III유형(지역혁신형)에 대해 3개 지역에 대해 358억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1,074억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교육부는 III유형을 도입한 취지를 대학이 지역혁신역량 강화 및 대학간 역할 분담을 고려한 자율적 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대학이 지자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발전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2019년부터 기존 I 유형은 ‘대학의 기본역량 강화지원’을, II유형은 ‘대학의 적정규모화 및 전략적 특성화 유도지원’을 하고 있으나, 최근 학령인구 감소 및 이에 따른 지역대학의 위기 등으로 인하여, 대학의 기본역량(I유형) 중 지역혁신역량 지원과 특성화 유도 지원(II유형) 시 지역내 대학간 전략적 역할분담 고려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III유형은 기존 I, II유형과 사업목적은 유사하지만 사업추진체계, 재정지원방식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I, II유형의 사업추진체계는 대학이 단독으로 추진하며 국고를 100% 지원하는 반면, III유형은 지자체 주도로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해 지자체와 주관대학이 지역대학 및 유관기관과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추진하는 방식이며 지자체가 사업비 일부를 부담한다. 또한 재정지원방식에 있어서도 I, II유형은 대학기본역량 진단결과와 대학별 재정지원을 직접적으로 연계하여 포물러 방식으로 지원하는 반면, III유형은 대학기본역량진단결과 활용방식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대학혁신지원의 I·II유형과 III유형 비교]

	I유형 자율협약형	II유형 역량강화형	III유형 지역혁신형
사업기간	2019-2021년	2019-2021년	2020년(시범)
2020년 예산안	6,540억원	362억원	1,074억원
사업목적	대학의 역량강화와 자율 혁신을 지원하여 대학이 국가 혁신성장 및 균형발전의 핵심주체로서 역할기여		
	대학의 기본역량 강화 지원	대학의 적정규모화 및 전략적 특성화 유도 지원	지자체·산업과 연계한 대학의 자율적 혁신 지원
사업추진체계	- 자율개선대학 - 국고 100% - bottom up	- 역량강화대학 - 국고 100% - bottom up	- 지역대학 - 지방비 매칭(지자체 연계) - bottom up
재정지원 방식	- 대학기본역량 진단결과와 직접적인 연계 지원(다만, II유형 선정시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평가) - 대학에 포물러 방식 지원		대학기본역량 진단결과와 연계방법 불명확

자료: 교육부

또한 사업 추진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사업 효과성, 타 재정지원사업과의 관계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아직 III유형의 지역별 예산배분, 선발요건·선발방식 등에 대한 세부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정책연구 및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 중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으나, 지자체 예산일정, 준비기간, 사업기간 등을 고려할 때 III유형(지역혁신형)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⁶⁾

6) 아울러, 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학간, 대학과 지자체간 연계가 단순히 예산을 나누어 가진 후 독자적인 사업을 하는 기계적인 방식이 아닌,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에 의한 유기적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타 부처에서 수행 중인 대학 및 지역 대상 재정지원사업과의 관계 설정을 명확히 하여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¹⁾에 따라 교직원의 퇴직·사망·비직무상 장해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퇴직유족급여, 비직무상 장해급여, 퇴직수당 등을 지급하며, 교직원의 직무상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장해급여, 재해유족급여, 부조급여 등을 지급하고 있다.

연금급여²⁾의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 보다 4,833억원(18.2%) 증가한 3조 1,364억원 규모이며, 재해보상급여³⁾는 101억원(23.1%) 증가한 539억원 규모이며, 퇴직수당급여⁴⁾는 189억원(2.8%) 감소한 6,553억원 규모이다.

[2020년도 연금급여, 재해보상급여, 퇴직수당급여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 (B)	증감	
		본예산	변경(A)		B-A	(B-A)/A
연금급여	2,656,372	2,766,929	2,653,104	3,136,410	483,306	18.2
재해보상급여	46,370	43,757	43,757	53,873	10,116	23.1
퇴직수당급여	608,033	560,342	674,167	655,262	△18,905	△2.8

자료: 교육부

위 3개 세부사업은 대표적인 의무지출 사업으로서 의무지출(mandatory spending)은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로 정의할 수 있다.

김성은 예산분석관(sekim06@assembly.go.kr, 788-4634)

1)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3조(급여) 교직원의 퇴직·사망·장해(직무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교직원의 직무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해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

2) 코드: 사학연금기금 6131-400

3) 코드: 사학연금기금 6132-401

4) 코드: 사학연금기금 6133-402

나. 분석의견

사학연금기금의 의무지출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하여, 기금의 수입 및 지출, 재정수지를 적절하게 계획·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연금급여, 재해보상급여, 퇴직수당급여 등 의무지출 추계를 위해 별도의 방법론을 개발하여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과거 증가율을 적용해 산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연금급여의 경우 지급 건수 및 단가의 2016~2018년간 평균 증가율을 산출한 후 2018년 결산값에 증가율을 두번 곱하여 2020년 예산안 규모를 산출한다. 재해보상급여의 경우 급여별로 5년('14~'18년) 혹은 3년('16~'18년) 증가율을 2018년 결산값에 적용하고, 퇴직수당의 경우 지급 건수 및 단가의 2015~2018년간 평균 증가율을 산출한 후 2018년 결산값에 증가율을 두번 곱하여 2020년 예산안 규모를 산출한다.

이에 따라 동 급여에 대한 계획변경이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계획변경액 규모가 커지고 있다. 연금급여의 경우 계획변경액이 2016년 240억원에서 2018년 1,191억원이며, 2019년에도 1,138억원의 계획변경이 이루어졌다. 재해보상의 경우 계획변경액이 2015년 30억원에서 2018년 105억원으로 확대되었다. 퇴직수당의 경우 계획변경이 확대되어 2018년 1,578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2019년에도 1,138억원의 계획변경이 이루어졌다.

[연금급여, 재해보상급여, 퇴직수당급여 사업 예산의 계획 대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급여	연도	당초 계획(A)	변경 (B)	집행 (C)	불용액	계획변경 규모(B-A)	계획 대비 오차(C-A)
연금	2013	1,689,168	1,701,450	1,698,518	2,932	12,282	9,350
	2014	1,893,063	1,887,063	1,867,069	19,994	△6,000	△25,994
	2015	2,069,914	2,107,053	2,094,182	12,871	37,139	24,268
	2016	2,232,092	2,256,092	2,241,637	14,455	24,000	9,545
	2017	2,493,088	2,465,010	2,429,378	35,632	△28,078	△63,710
	2018	2,538,523	2,657,643	2,656,372	1,271	119,120	117,849
	2019	2,766,929	2,653,104	-	-	△113,825	-
재해 보상	2013	37,264	37,264	32,398	4,866	0	△4,866
	2014	34,098	34,098	32,849	1,249	0	△1,249
	2015	32,863	35,861	35,766	95	2,998	2,903
	2016	32,451	39,440	38,309	1,131	6,989	5,858
	2017	39,046	41,856	41,804	52	2,810	2,758
	2018	41,319	51,816	46,370	5,446	10,497	5,051
	2019	43,757	43,757	-	-	0	-
퇴직 수당	2013	299,997	370,539	364,168	6,371	70,542	64,171
	2014	335,583	420,910	419,134	1,776	85,327	83,551
	2015	448,896	558,898	543,914	14,984	110,002	95,018
	2016	433,502	424,705	421,446	3,259	△8,797	△12,056
	2017	460,337	485,605	485,412	193	25,268	25,075
	2018	460,016	617,778	608,033	9,745	157,762	148,017
	2019	560,342	674,167	-	-	113,825	-

자료: 교육부

사학연금의 경우 추계방법의 부재는 매년 재정수지에 오차가 크게 발생시키고 적절한 재정수지 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 2016년 재정수지는 1조 1,344억원으로 당초 계획한 재정수지(1조 8,005억원)의 63.0%이며, 2017년 재정수지는 1조 4,462억원으로 당초 계획(1조 7,563억원)의 82.3%, 2018년 재정수지는 1조 1,251억원으로 당초 계획(2조 1,330억원)의 52.7% 수준에 불과하였다.

공적연금의 수입 및 지출 규모, 재정수지의 적정 관리를 위해서는 지출 규모 추계의 정확성이 전제가 되어야 하므로, 의무지출 추계 기법을 조속히 개발하여 추계의 정확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BK21¹⁾ 플러스²⁾는 우수 대학원의 교육 및 연구 역량 강화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 보다 873억원(29.4%) 증가한 3,840억원 규모로 편성되었다.

[2020년도 BK21 플러스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BK21 플러스 사업	296,832	296,732	296,732	383,983	87,251	29.4
BK21 플러스 사업	271,621	272,417	272,417	364,083	91,666	33.6
글로벌 박사 양성 사업	25,211	24,315	24,315	19,900	△4,415	△18.2

자료: 교육부

BK21 플러스 사업은 2019년 3단계 사업이 종료되고 2020년 9월 4단계 사업을 출범할 계획이다. 2020년 예산안은 3단계 BK21 플러스사업(‘20.3.~’20.8.) 잔여사업비 1,315억원, 4단계 BK21 플러스 후속사업(‘20.9.~’21.2.) 2,326억원, 글로벌박사양성사업 199억원을 포함한다.

4단계 사업에서는 인력양성 규모를 연간 1.7만명에서 1.9만명으로 2,000명 확대하고, 석·박사생 연구장학금 지원 단가를 인상(석사 월 60→70만원, 박사 월 100→130만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학원 본부 중심으로 대학원 교육·연구 체도를 혁신하여 연구중심대학 체제로 전환하고, 학문 분야 간 융복합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학원 혁신지원비(연간 529억원)를 신설하였다.

2020년 예산안 기준으로, 4단계 BK21 플러스 사업의 연간 사업비는 4,080억원 수준으로 3단계(2,720억원) 대비 49.8%(1,360억원) 증가한 규모이다.

김성은 예산분석관(sekim06@assembly.go.kr, 788-4634)

1) BrainKorea 21

2) 코드: 일반회계 2233-300

[BK21 사업 개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기간	'99.3. ~ '06.2.	'06.3. ~ '13.2.	'13.9. ~ '20.8.	'20.9. ~ '27.8.
예산(1년)	1,996억	2,805억원	2,724억원	4,080억원
지원대상	72개교 438개 사업단(팀)	74개교 568개 사업단(팀)	74개교 550개 사업단(팀)	추후선정

자료: 교육부

나. 분석의견

첫째, BK21 플러스 사업은 4단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 준비와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BK21 플러스 사업 4단계는 3단계에 비해 1년 사업비가 1,360억원(49.8%) 증액된 4,080억원 규모이다. 주요 증액 사유는 교육연구단 지원비가 3단계에 비해 828억원(30.7%) 증가하였으며, 대학원 혁신지원비(529억원)가 신규로 도입되었다.

교육연구단 지원비 편성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인력양성 규모를 연간 1.7만명에서 1.9만명으로 2,000명 확대하고, 석·박사생 연구장학금 지원 단가를 인상(석사 월 60→70만원, 박사 월 100→130만원)하면서 연구장학금이 497억원(30.7%) 증가하였으며, 연구장학금에 연동되어 사업비 및 간접비가 각각 290억원(30.7%), 41억원(30.7%) 증가하였다.

[BK21 플러스 사업 비교: 3단계 vs 4단계]

(단위: 백만원, %)

		BK21플러스(3단계)		4단계 BK21			
		지원내용	예산(A)	지원내용	예산안(B)	증감	
						B-A	(B-A)/A
교육연구단 지원비	연구장학금	- 1.7만명 - 석사 60만원, 박사 100만원	161,915	- 1.9만명 - 석사 70만원, 박사 130만원	211,584	49,669	30.7
	사업비	신진연구인력 지원, 국제학술대회 참가경비 지원 등	94,450	신진연구인력 지원, 국제학술대회 참가경비 지원 등	123,424	28,974	30.7
	간접비	교육연구단 지원비의 5%	13,493	교육연구단 지원비의 5%	17,632	4,139	30.7
	소계		269,858		352,640	82,782	30.7

	BK21플러스(3단계)		4단계 BK21			
	지원내용	예산 (A)	지원내용	예산안 (B)	증감	
					B-A	(B-A)/A
대학원 혁신지원비	-		대학원 혁신 계 획 평가 결과 및 교육연구단 수 등을 고려하 여 차등지원	52,896	52,896	순증
사업평가 관리비	운영비	2,559	운영비	2,550	△9	△0.4
합계		272,417		408,086	135,669	49.8

자료: 교육부

4단계 BK21 사업은 3단계 사업과 목적, 지원 대상 등에서 유사하지만, 예산의 증액 규모, 인재양성 방향 변경, 내역사업의 신규 도입 등을 고려할 때, 기획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성과를 담보하기 위한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다.³⁾

첫째, 4단계 BK21 사업의 예산 규모는 3단계 대비 약 1.5배 수준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업비 증액의 타당성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기본 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인재양성 방향의 경우 3단계에서는 미래기반 창의인재양성, 글로벌인재양성, 특화전문인재양성으로 구분하여 추진하였으나, 4단계에서는 미래인재양성사업과 혁신성장선도인재양성사업의 두 가지 방향으로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인재양성 사업은 기초과학, 응용과학, 인문, 사회 등 기초, 핵심학문 분야 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사업이며, 혁신성장선도인재양성사업은 8대 핵심선도사업 및 13대 혁신성장동력 분야 인재 양성 및 사회문제해결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으로 국가적으로 요구되는 신산업분야의 고급 연구인력을 양성한다는 취지로 4단계에서 확대되는 사업이다. 인재 양성 방향이 재편되고 혁신성장선도인재양성사업 예산의 규모가 확대되는 것을 감안할 때 보다 엄밀한 사업 성과 관리 및 효과성 확보 기제가 필요하다.

셋째, 신규 도입되는 대학원 혁신지원비는 교육연구단에게만 지원하던 기존 사업과 달리 대학 본부에 지원하여 대학원 학사 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의 사업이다. 교육부는 기존 BK21 사업의 사업단 중심 지원에 따른 학문분야 간 분절

3) BK21의 경우 1단계 도입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가 없어 수행하지 않았으며 2단계의 경우 1단계 사업과 사업내용이 연속성 상에 있어 수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3단계 BK21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2단계 BK21사업과 WCU사업을 통합하여 새로운 사업으로 설계하고자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추진하였다.

화 현상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원 본부차원에서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학원 혁신지원비를 신설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기존의 사업단의 성과를 관리하던 방식으로는 대학 본부를 관리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 교육부는 4단계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⁴⁾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교육부는 BK21 플러스 4단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 준비와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사업비 예산을 연구장학금 예산과 비례하여 증액하는 등 사업비 구성 내역이 일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BK21 사업의 예산은 연구장학금과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장학금의 경우 지원대상과 지원단가 인상을 근거로 그 규모가 산정된다. 그러나 사업비는 BK21 사업 총예산의 35%로 산정되므로 연구장학금 예산의 증가와 함께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구조이다.

2020년 예산안 편성의 경우 연구장학금은 지원대상 확대(1.7 → 1.9만명) 및 지원단가 인상(석사 60→70만원, 박사 100→130만원)으로 전년대비 30.7% 증액되어 2,116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업비도 자동적으로 전년대비 30.7% 증액되어 1,234억원이 편성되었다.

사업비는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산학협력전담인력 인건비, 교육과정 개발비, 연구활동 및 산학협력비, 국제화경비로 집행되는 연구단 전체의 경비로, 연구장학금 지원대상 및 지원단가 인상과 연동하여 증액하기 보다는 사업비 자체의 적정 규모를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증액된 신진연구인력 인건비는 기존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단가 인상(50만원⁵⁾)과 연구장학금 지원대학원생 증가(전년대비 17%)에 따른 신진연구인력 증가를 위해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국제화 경비 등 기타 사업비는 지난 7년간의 물가상승률(10%)과 연구장학금 지원대학원생 증가 비율(17%)

4) 특히 3단계 BK21 플러스 사업에서 대학원 제도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성과지표에 포함해 간접적으로 유도했으나,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재정 지원으로 유도한다는 취지이므로 재정지원이 대학원 전체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지 성과를 검토할 필요 있다.

5) 2020년 기준 2인 가구 중위소득이 299만원, 3인 가구 중위소득이 380만원임을 고려하여 인건비 기준을 '25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였다고 한다.

을 적용하면 547억원에서 704억원으로 증액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교육부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대학원생 교육·연구에 신진연구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사업비 예산 편성은 교육 연구단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지원 예산 규모를 연구장학금 지원대학원생 증가와 기계적으로 연계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교육부는 지난 7년 간의 물가상승, 기준 단가의 동결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증액하더라도 각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산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본적으로 신진연구인력 등 인력에 대한 채용 및 인건비 지원은 대학에서 부담해야 할 성격이 존재하므로, BK21 사업비를 통한 신진연구인력 지원 외에도 대학 차원의 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BK21 사업의 경우 사업비 예산을 연구장학금 예산과 비례하여 증액하는 등 사업비 구성 내역이 일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산출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은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¹⁾의 내역사업으로, 중소·중견기업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재학생 학비부담 경감 및 대졸자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 보다 191억원(33.1%) 감소한 385억원 규모이다.

[2020년도 맞춤형 국가장학금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 (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4,012,671	3,998,603	3,998,603	4,001,776	3,173	0.079
- 희망사다리 장학금	64,627	86,407	86,407	86,408	1	0.0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35,100	28,080	28,080	45,880	17,800	63.4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28,800	57,600	57,600	38,528	△19,072	△33.1
사업운영비	727	727	727	2,000	1,273	175.1

자료: 교육부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은 2018년 청년 일자리 대책 사업으로 추경에 신규 도입(290억원)된 사업으로, 중소기업 취업 후 대학에 진학하는 선취업 후진학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졸 중소기업 재직자(3년 이상)인 대학생(1~4학년)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 예산안 편성에서는 지원요건 완화를 고려하여 2019년 9,000명 대비 2,200명 증가한 11,200명으로 확대하였으며, 사이버대, 방송통신대 등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학의 재학생 참여를 고려하여 예산 편성단가를 함께 조정하였다.²⁾

김성은 예산분석관(sekim06@assembly.go.kr, 788-4634)

1) 코드: 일반회계 2645-300

2) 2019년: 57,600백만원(9천명 × 1.5학기 × 3.2백만원)

2020년(안): 38,528백만원(11.2천명 × 2학기 × 1.72백만원)

나. 분석의견

고졸 후학습자 장학생으로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은 2018년 추경에 도입된 사업으로 2018년 9,000명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지원인원은 4,014명(44.6%)에 그쳤으며 예산 288억원 중 66억원(22.9%)만이 집행되었다. 2019년에도 9,000명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9월 현재 지원인원은 66.5%이며 예산 576억원 중 137억원(23.8%)이 집행되었다.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집행 현황]

(단위: 명, 억원, %)

구분	계획		실적			
	지원인원	예산	지원인원	집행률	예산	집행률
2018년	9,000	288	4,014	44.6	66	22.9
2019년	9,000	576	5,986	66.5	137	23.8
2020년	11,000	386	-	-	-	-

주: 2019년은 9월 실적, 사업운영비 제외

자료: 교육부

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먼저, 동 사업은 현재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이고 3년 이상 재직경력³⁾이 있는 학생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대기업, 비영리기관 등에 재직 중인 학생과 재직경력이 3년 미만인 학생의 신청이 예상보다 많았으며 이들이 자격요건에 미달하여 탈락되었기 때문이다.⁴⁾

또한 교육부는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의 지원단가를 연평균 등록금 640만원으로 가정하여 편성하였으나, 집행 결과 등록금 수준이 이보다 낮은 사이버대(253만원), 방통대(75만원), 전문대(593만원) 재학생의 비중이 높아⁵⁾ 불용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3) 전 직장 경력은 기업규모와 무관하며,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면서 재직경력 3년 이상이면 지원대상이 된다.

4) 2018년 신청자 9,626명중 4,662명이 탈락하였으며, 탈락한 사유는 기업규모 미충족(비영리법인, 대기업 근무 등)이 54.6%, 재직기간 미충족이 29.2%로 대부분(83.8%)을 차지하였다.

5) 2018년 지원인원 4,014명 중 4년제 1,848명, 전문대 1,127명, 사이버 768명, 방통대 271명이다.

교육부는 지원대상을 2019년 9,000에서 2020년 11,000명으로 확대하였으며, 2020년 예산안 편성에서는 지원요건을 완화하였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먼저 장학금 신청 요건 중 재직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였으며, 재직기관 요건을 중소·중견기업에서 비영리기관, 대기업을 신규로 포함하였다⁷⁾. 다만, 비영리기관, 대기업 재직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재직자(등록금 전액 지원)와 차등을 두어 등록금의 50%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사업 내용]

		2019	2020(안)
지원인원		9,000명	11,000명
지원 요건	재직기간	3년 이상	2년 이상
	재직기관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비영리기관, 대기업
지원수준		등록금 전액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등록금 전액 - 비영리기관 및 대기업 재직자: 등록금의 50%

자료: 교육부

그러나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은 2018년 청년 일자리 대책 사업⁸⁾으로 도입되었으며, 동 대책의 취지는 산업성숙화 등으로 대기업을 신규채용은 위축되고 중소기업의 빈일자리가 많으므로 중소기업 일자리 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중소기업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다양한 재정지원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도 이러한 취지의 일환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선취업한 후 진학하는 재직자에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2018년 결산 심사에서 동 사업에 대해 실집행이 저조하고 집행률 제고를 위해 대기업 재직자까지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은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중소기업에서 재직 중인 청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6)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제외

7)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

8) 관계부처 합동, 「청년 일자리 대책」, 2018. 3.

지원 자격 요건을 재설계하여 집행률 제고방안을 마련하라고 시정요구하였다. 또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 심사 소위에서 동일한 취지의 시정요구사항이 의결되었다.

따라서 사업의 도입 취지 및 국회의 결산 심사 경과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는 동 사업을 통해 대기업보다는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이 우선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교육부 소관 R&D 사업은 대학혁신지원(R&D) 등 23개 사업이다. 2020년 예산안은 전년보다 5,134억원(22.3%) 증가한 2조 8,201억원 규모이다¹⁾.

[2020년도 교육부 소관 R&D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교육부 소관 R&D 세부사업명	2019년 예산	2020년 예산안	증감	
			B-A	(B-A)/A
23개 세부사업	2,306,749	2,820,119	513,370	22.3
에너지환경통합형학교 미세먼지관리기술개발(R&D)	636	667	31	4.9
융합형과학기술인재양성기반구축(R&D)	2,617	2,617	0	0
BK21플러스사업(R&D)	296,732	383,983	87,251	29.4
대학혁신지원(R&D)	568,755	803,452	234,697	41.3
산학협력고도화지원(R&D)	292,515	368,946	76,431	26.1
의과학자육성지원(R&D)	293	257	△36	△12.3
인문사회기초연구(R&D)	161,744	185,120	23,376	14.5
인문학진흥(R&D)	44,854	42,973	△1,881	△4.2
한국학진흥(R&D)	15,272	14,059	△1,231	△7.9
사회과학연구지원(R&D)	26,085	18,237	△7,848	△30.1
한국학중앙연구원출연(R&D)	29,292	32,217	2,925	10.0
한국고전번역원출연(R&D)	19,463	20,499	1,036	5.3
고전문헌국역지원(R&D)	4,227	3,640	△587	△13.9
학술자원공동관리체계구축(R&D)	8,998	11,485	2,487	27.6
연구윤리활동지원(R&D)	1,005	1,205	200	19.9
학술단체지원(R&D)	7,637	7,237	△400	△5.2
대학학술정책연구기획평가(R&D)	12,935	14,402	1,467	11.3
글로벌연구네트워크지원(R&D)	5,018	1,717	△3,301	△65.8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R&D)	217,669	337,366	119,697	55.0
개인기초연구(교육부)(R&D)	292,231	170,662	△121,569	△41.6
정책연구개발사업(R&D)	1,171	1,112	△59	△5.0
학교기업지원사업(R&D)	6,814	7,480	666	9.8
전문대학혁신지원(R&D)	290,786	390,786	100,000	34.4

자료: 교육부

김성은 예산분석관(sekim06@assembly.go.kr, 788-4634)

- 1) 정부 R&D예산 중 교육분야 예산은 2조 1,877억원 규모이며, 정부 R&D예산에는 위 표의 23개 사업에 국립대학 인건비(1조 6,977억원)를 포함한 24개 사업이 포함되며 각 사업에 조정계수(0.25~1.0)가 적용되어 산정된다.

나. 분석의견

R&D 사업의 집행가능성과 회계연도 독립원칙을 고려하여 연구기간을 12개월로 산정한 신규 과제의 예산안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의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과제형 R&D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당해 회계연도에 실제 소요되는 연구기간 및 협약시기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회계연도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예산 편성의 기준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신규과제는 9개월분을 편성하되 하반기에 협약하는 과제는 6개월분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신규과제에 대한 사업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연내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려는 취지이다.²⁾

교육부는 23개 R&D 사업 중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 과제에 대해서도 연구기간을 모두 12개월로 편성하였다. 2020년 3개 사업 총 예산안 2,422억원 중 신규과제에 대해 12개월 기간을 반영한 예산 규모는 1,030억원(42.5%)이다.

[교육부 소관 R&D 사업 중 12개월 편성 신규 과제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교육부 소관 R&D 세부사업명	2019년 예산	2020년 예산안 (A)	2020년	
			12개월 편성 신규 과제(B)	비중 (B/A)
인문사회기초연구(R&D)	161,744	185,120	92,423	49.9
인문학진흥(R&D)	44,854	42,973	8,271	19.2
한국학진흥(R&D)	15,272	14,059	2,337	16.6
합 계	221,870	242,152	103,031	42.5

자료: 교육부

교육부는 이에 대해 동 사업들은 인문 분야 R&D 사업이므로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의 적용 대상사업이 아닌 것을 판단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2) 다만, 상반기 협약체결 예정인 단년도 과제의 경우에는 직전년도 협약준비를 전제로 12개월 예산 편성

그러나 동 지침의 취지는 R&D 사업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신규 과제의 경우 회계연도 독립원칙을 고려해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편성하라는 것이며, 교육부 R&D 사업은 모두 정부 R&D예산에 포함되는 사업으로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 규정한 R&D 사업 관리 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규 과제에 대한 사업준비기간 및 회계연도 독립원칙을 고려하여 12개월 지원 예산을 편성한 R&D 사업의 신규 과제에 대해 2020년도에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안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¹⁾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고등학생들에게 취업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이 당면한 고졸 기술·기능 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 보다 327억원(41.9%) 증가한 1,107억원 규모이다.

[2020년도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 (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43,299	78,000	78,000	110,700	32,700	41.9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42,198	76,500	76,500	76,800	300	0.1
사업운영비	1,101	1,500	1,500	1,500	0	0
현장실습 지원	0	0	0	32,400	32,400	순증

자료: 교육부

동 사업은 ① 직업계고²⁾ 및 일반고 위탁 1년 과정(이하 “직업계고”) 3학년 학생이 ② 현장실습 또는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하고 ③ 중소기업에 취업(근로계약 체결)한 경우 1인당 3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려는 것이고, ④ 수혜 학생은 6개월 간 중소기업에 의무 종사하며, 의무종사기간을 미준수한 학생은 장학금을 반환³⁾하도록 하고 있다.

2020년 예산안 편성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장려금의 지원단가를 2019년 3백만원에서 2020년 4백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인원을 2019년 2.8만에서 2020년 3.2만

김성은 예산분석관(sekim06@assembly.go.kr, 788-4634)

1) 코드: 일반회계 4151-300

2)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계열

3) 미반환 장려금은 보증보험사를 통해 환수조치하며, 미반환자에 대해서는 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 발생

명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현장실습 학생에게 60만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현장실습 지원금을 도입하여 고졸 취업 활성화 지원을 세분화하였다.

[2020년도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예산안 편성 내역]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 (산식) 76,800백만원 = 3.2만명 × 60% × 4백만원
 - (지원 인원)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직업계고 졸업생 및 일반고 위탁과정 수료생은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인원을 반영하여 2.8 → 3.2만명으로 확대
- 현장실습 지원
 - (산식) 32,400백만원 = 현장실습 참여예상 2.7만명* × 60만원** × 2개월
 - * `17~`19년 현장실습 참여인원(도제 제외) 평균 27,388명
 - ** `20년 월 최저임금 1,795,310원 × 30% = 538,593원 보조(현장실습 참여 학생은 기업으로부터 최저임금 70% 수준 수당을 지급)

나. 분석의견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예산안에 대해 다음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의 경우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 및 장려금 지급이 연도 내에 이루어지는 비중이 낮으므로, 예산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은 직업교육을 받고 취업하는 고등학교 졸업생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취업률을 제고하고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를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 청년 고용대책의 일환으로 추경예산에 신규로 편성되었다.

2018년 24,000명에 대해 300만원을 지원하는 예산 735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연도내 집행액은 95억원(집행률 13.2%)이고, 2019년도로 이월 집행되어 2019년 10월 14일 현재 누적집행액은 445억원(61.8%)이다.⁴⁾

4) 2019년 예산은 780억원 규모이며 현재 신청 접수 중으로 집행액은 없다.

[2018년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예산의 집행 경과]

(단위: 명, 백만원, %)

지급일자	지급인원	지급금액	누적지급률
'18. 12. 21.	3,172	9,516	13.2
'18. 12. 22. ~ '19. 3. 28.	2,780	8,340	24.8
'19. 3. 29. ~ 6. 25.	6,076	18,228	50.1
'19. 6. 26. ~ 10. 14.	2,795	8,385	61.8
합계	14,823	44,469	61.8

자료: 교육부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의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은 2018년 현장실습 제도 개선 이후 특성화고의 경우 수업일수의 2/3가 지난 10월 중순부터 취업이 가능하고, 실제로 동계방학 이후에 취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018년 예산의 집행 결과를 볼 때, 현장실습 참여로 수업일수의 2/3이 지난 10월 중순에 취업이 결정된 학생 비율은 28.1%이다. 또한 2018년의 경우 사업시행 첫해로 시스템 미구축으로 인해 서류 확인, 기업 규모 확인 등 심사에 장기간 소요되어 연도내 실집행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동 사업의 실집행 부진을 감안하여 사업방식을 개편하여 전체 지원 인원(3.2만명) 중 학기 중 취업자(60%, 1.92만명) 지원분만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하고 동계방학 이후 취업자(40%, 1.28만명) 지원분은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였다고 한다. 또한 2019년부터는 장려금 신청 및 심사 시스템이 구축되어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예산안은 10월 중순 이후부터 동계방학 전에 취업이 결정된 학생 비율을 60%로 가정⁵⁾하고 이들이 모두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계획에서 편성되어 2018년 실적(10월 중순 취업이 결정된 학생 비율 28.1%, 연도 중 장려금 집행률 13.2%) 보다 낙관적인 전망이므로 예산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5) 교육부는 현장실습 보완방안 발표(2019. 1.)에 따라 수업일수의 2/3가 지난 10월 중순부터 취업이 가능한 선도기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둘째,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의 단가 인상(300만원→400만원)은 취업 유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업효과성에 대한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은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진학 일변도에서 벗어나 취업이라는 성장경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직업계고 학생이 졸업 후 취업 시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 추경예산에서 신규로 도입되었다. 정부 예산안은 400만원을 지원단가로 하여 975억원으로 제출되었으나,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원단가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있어 지원단가가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하되고 사업비는 975억원에서 735억원으로 감액되었다.

교육부는 2020년 예산안에서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의 지원단가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한 것에 대해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성화고 등 직업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취업 의지를 높일 유인체계가 필요하며, 취업이 아닌 대학 진학을 선택하거나 진로 결정을 유예하고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의 지원 등과 비교하여 단가 인상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중소·중견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 대상으로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통해 대학 등록금 전액과 장려금(학기당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 고등학교 졸업 이후 취업 보다는 대학 진학 유인이 높으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씩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고 있어 고등학교 졸업 이후 실업 상태로 남아 있을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대학생 대상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과 유사하게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해서도 먼저 취업 이후 대학에 진학할 경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의 지원단가를 인상하여 대학 진학 보다는 취업 의지를 높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그리고 구직촉진수당은 중위소득 120%까지 소득계층에 대해 지원하며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반면,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은 소득기준이 없으며 한번에 300만원을 지원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두 사업 간 유인효과에 있어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취업연계 장려금 또는 장학금 지원 사업]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구직촉진수당
소관 부처	교육부	교육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사업 목적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 활성화	고등학교 졸업 후 선취업 후진 학 활성화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	청년층 구직 지 원
지원 대상	직업계고 졸업 생	고등학교 졸업 이후 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희망 대학생	중위소득 120% 이하 구직자
지원 요건	중소기업 등 취 업	중소기업 등 재 직	졸업 후 중소기 업 등 취업	구직활동
지원 내용	취업시 300만원	등록금 전액	등록금 전액 학기당 200만원	6개월간 월 50 만원

자료: 교육부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의 지원단가 인상의 취업유인 효과에 대해 좀 더 엄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바탕으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장실습 지원금은 기존 국가시책특별교부금 사업(현장실습 수당)의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재원을 교부금에서 국고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사업효과성, 국고와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에 대한 엄밀한 검토를 통해 적정 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직업계고 학생의 현장실습 수당은 국가시책특별교부금으로 편성되어 2017년과 2018년 1만명 대상 월 20만원씩 연 20억원, 2019년에는 3만명에 대해 월 20만원을 지원하여 연 60억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국가시책특별교부금에 동 사업을 편성한 취지는 2018년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도입으로 현장실습 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급여가 지급되지 않게 되면서, 교육부는 현장실습에 참여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⁶⁾를 지원하여 현장실습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2020년에는 현장실습 지원금 예산안 규모가 2019년 60억원에서 324억원으로 확대되었으며, 교육부 일반회계에 편성되었다. 교육부는 현장실습 참여예상 2.7만명

6) 식비 7천원, 왕복 대중교통비 3천원을 합한 1일 1만원

을 대상으로 월 60만원씩 현장실습 참여기간에 따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월 지원 단가(60만원)는 2020년 월 최저임금(1,795,310원)의 30% 수준으로, 기업이 최저임금의 70%를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권고⁷⁾하였으므로 차액인 30%를 정부가 보조한다는 계획으로 산정된 수준이다.

[직업계고 현장실습 지원금 현황]

	2019	2020(안)
재원	국가시책특별교부금	교육부 일반회계
예산 규모	60억원	324억원
편성 내역	- 지원대상자: 3만명 - 지원단가: 1인당 월 20만원 (평균 1개월 지원)	- 지원대상자: 2.7만명 - 지원단가: 1인당 월 60만원 (평균 2개월 지원)
지원단가 산출 근거	식비 7천원, 왕복 대중교통비 3천원을 합한 1일 1만원	월 최저임금(1,795,310원)의 30%

자료: 교육부

교육부는 현장실습 후 취업연계율이 높다는 점에서 고졸 취업 및 현장실습을 독려하기 위해 현장실습지원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으며,⁸⁾ 2017년말 현장실습 사고 발생으로 학습중심 현장실습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한시적으로 국가시책특별교부금으로 현장실습 수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세입여건이 낙관적이지 않으므로, 현장실습지원금의 사업효과성, 국고와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에 대한 엄밀한 검토를 통해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재원조달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7) 현장실습 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산업체·학생·교사·학계·교육청·부처담당자로 구성된 T/F 협의 결과에 따라 최저임금의 70% 수준을 권고하였다.

8) 직업교육을 받은 유능한 기술기능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직업교육을 받은 해당 분야에 현장실습에 참여하여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실무역량 강화를 기반으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실습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가. 현 황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지원¹⁾은 고등학교 취업지원을 위한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간 협력체계 마련, 플랫폼 구축 및 시·도 취업지원센터 역량강화 지원, 현장 실습 및 취업 현황 관리·모니터링 등의 역할 수행하는 국가차원의 중앙취업지원센터(고졸취업지원)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이다. 2020년도 신규 사업으로 예산안은 18억원 규모이다.

[2020년도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 (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0	0	0	1,800	1,800	순증

자료: 교육부

편성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협력 체계 구축 1억 8,000만원, 플랫폼 운영 및 역량강화 4억 9,250만원, 모니터링 5억 5,000만원, 센터 운영비 5억 7,750만원 등이다.

[2020년도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예산안 편성 내역]

- 협력 체계 구축: 180백만원
 - 고졸취업지원 네트워크 구축, 민(산)·관 공동실무협의체 운영, 업무협약 확대 등
- 플랫폼 운영 및 역량강화: 492.5백만원
 - 현장실습·취업지원을 위한 플랫폼 운영(홈페이지 및 앱 구축), 매뉴얼 제작, 정책연구 추진 등
- 모니터링: 550백만원
 - 현장실습·취업 모니터링, 고졸 취업 우수기업 발굴 및 취업 지원, 홍보 등
- 센터 운영 : 577.5백만원
 - 센터 운영비 등

김성은 예산분석관(sekim06@assembly.go.kr, 788-4634)

1) 코드: 일반회계 4151-301

나. 분석의견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중앙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취업지원센터와 시·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의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중앙취업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시·도교육청은 2012년부터 취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며 2018년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3²⁾에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의 근거 조항이 마련되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운영비를 국가시책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12 ~ 2019년 동안 187억원을 지원하였다.

[시·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운영 현황]

구 분	취업지원센터
설립연도	2012년
설립목적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 강화 등 직업교육훈련 활성화
법적근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3
주요 기능	산·관·학 협력체계 구축 단위학교 취업역량 강화 지원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교원 취업역량 강화 연수 산학연계 취업박람회 개최 취업지원 상담 및 콜센터 운영 등
운영형태	총 18개소(교육청별 1개소, 단 경기도는 2개소)
예산	국가시책특별교부금에서 2012~2019년 동안 187억원 지원

자료: 교육부

교육부가 2020년 예산안에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현재 시·도교육청별로 운영 중인 취업지원센터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장실습·취업지원을 위한 플랫폼 운영 및 매뉴얼 제작 등 통합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2)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3(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시·도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강화 등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교육감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시·도교육청에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취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그러나 고졸취업지원과 현장실습 등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중앙취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마련하여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중앙취업지원센터와 시·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의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서비스 전달체계의 체계적 구축이 필요하다.

여성가족부의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경우도 지자체 단위의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와 함께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정책 및 지원센터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지자체 단위의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와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의 근거와 업무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³⁾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교육부는 중앙취업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중앙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시·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와 중앙취업지원센터의 명확한 업무 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3)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단위의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경력단절여성등의 혼인·임신·출산과 휴직 후 복귀 등에 관한 상담, 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2. 경력단절여성등의 생애주기별 경력개발교육, 멘토링 및 네트워크 형성 등 경력단절 예방 프로그램 지원
3. 취업·창업 정보 제공 및 상담
4. 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5. 보육 지원 등 복지서비스 제공 및 연계
6.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관련 기관, 기업과의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운영
7.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 촉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3조의2(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정책 및 지원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력단절여성등의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상담, 교육 등 사업프로그램의 개발·보급
2. 경력단절여성등의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
3. 취업·창업지원 등의 상담, 교육 등 사업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장 조기 적응 프로그램 개발·보급
5.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관련 기관, 기업과의 전국단위 네트워크 구축·운영
6. 지원센터 평가 및 종사자 교육훈련
7.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가. 현 황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¹⁾은 전국단위 모집 장애학생 예술 중·고등학교(부산대 부설) 및 진로·직업교육 특성화고등학교(공주대 부설) 설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 보다 180억원(665.3%) 증가한 207억원 규모로 편성되었다.

[2020년도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 (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	0	2,702	2,702	20,679	17,977	665.3
부산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0	1,361	1,361	9,500	8,139	598.0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0	1,341	1,341	11,179	9,839	733.6

자료: 교육부

구체적으로 부산대 부설 특수학교와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는 설계비가 편성되었으며 2020년에는 공사비가 편성되었으며, 공사기간은 '20~'21년(2년)이며 2022년 3월에 개교가 예정되어 있다.

2020년 공사비 예산안 편성 내역을 보면, 부산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총공사비²⁾ 23,750백만원 중 1년차 공사비(40%)인 9,500백만원,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총공사비 22,358백만원 중 1년차 공사비(50%)인 11,179백만원이 편성되었다.

김성은 예산분석관(sekim06@assembly.go.kr, 788-4634)

1) 코드: 일반회계 1231-301

2) 부산대 부설 특수학교와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의 총공사비(2020~2021년)는 603억원이며, 2020년 공사비 예산안은 총공사비에 낙찰률(76.5%)을 반영한 공사비를 기준으로 편성되었다.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 사업 총사업비('19 ~ '21) 현황]

(단위: 백만원)

	부산대 부설 특수학교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
설계비(A)	1,361	1,341
시설비(B)	30,654	28,858
부대경비(C)	391	368
총사업비(A+B+C)	32,406	30,567

자료: 교육부

나. 분석의견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2020년 예산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하다.

동 사업은 2019년에 설계비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사업이 지연되어 두 학교 모두 2019년 말에 설계 공모를 추진하고 2020년에 설계 계약 및 착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부산대 및 공주대부설 국립 특수학교 설립은 당초 조달계약 방식에서 국제(지명)공모방식 적용('19.6.)으로 결정됨에 따라,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지정 등 추가 요구 절차 집행으로 설계공모 실시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 추진경과 및 계획]

	부산대 부설 특수학교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
추진 경과	· 특수학교 설립 관련 관계기관 협의('19.1~6월) · 설명회('19.6.10.)	· 부지변경('19.4월)
향후 계획	· 학교부지 도시계획 변경 ('19.9~11월) · 국제설계(지명)공모 추진(관리용역 발주 등, 11월~) · 설계 계약 및 착수('20.4월~) · 착공('20.10월~) · 개교예정('22.3월)	· 국제설계(지명)공모 추진(관리용역 발주 등, 10월~) · 설계 계약 및 착수('20.3월~) · 착공('20.10월~) · 개교예정('22.3월)

자료: 교육부

이에 따라 교육부는 설계 완료 이후 공사착공이 2020년 10월 이후에나 이루어질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의 경우 총공사비 중 1년차 공사비를 40% 편성하였고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의 경우 총공사비 중 1년차 공사비 50%를 편성하였다.

따라서 교육부는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의 설립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2020년 예산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국립대병원 지원¹⁾은 국립대병원의 신축, 이전, 환경개선, 의료장비, 개원준비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 보다 106억원 (16.8%) 증가한 737억원 규모로 편성되었다.

[2020년도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립대병원 지원	64,028	63,147	63,147	73,737	10,590	16.8
충남대병원分院 개원준비비	0	0	0	7,000	7,000	순증
충남대병원分院 집기비품비	0	0	0	3,408	3,408	순증
충남대병원分院 부착외 장비	0	0	0	4,670	4,670	순증

자료: 교육부

2020년 예산안에는 2020년 6월 개원 계획인 충남대병원分院에 대한 개원준비비(70억원), 집기비품비(34억원), 부착외 장비비(47억원) 등이 신규 내역사업으로 편성되었다.

나. 분석의견

충남대병원分院의 경우 총사업비 변동에 따라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진행 중이므로 예산안 심의 시 재검토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충남대병원分院에 대해 1, 2차 중심의 질료서비스를 공급할 계획 하에 2014년 9월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었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총사업비는 2,844억원 규모이다.

김성은 예산분석관(sekim06@assembly.go.kr, 788-4634)

1) 코드: 일반회계 2743-301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2014.09)]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항목	예비타당성조사	비고
A. 공사비	의료시설	145,386	총사업비관리대상 (총사업비관리지침 제3조 관리대상 근거)
	주차시설	17,821	
	신재생에너지	1,076	
	녹색건축물인증	408	
	소계	164,691	
B. 부대비	기본설계비	5,127	총사업비관리대상 (총사업비관리지침 제3조 관리대상 근거)
	실시성계비	4,195	
	감리비	6,263	
	조사 및 측량비	1,647	
	소계	17,232	
C. 용지보상비	용지구입비	30,847	총사업비관리대상 (총사업비관리지침 제3조 관리대상 근거)
	소계	30,847	
D. 기타투자비	의료기기 투자비	34,212	총사업비관리 비대상 (총사업비관리지침 제49조의2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집기비품 투자비	3,408	
	전산시스템 구축비	7,001	
	개원 전 운영비	1,163	
	소계	45,784	
E. 예비비	소계	25,855	
F. 총사업비(A~E)		284,410	

자료: 교육부

그러나 교육부는 2014년 충남대병원 분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시 계획되었던 병원운영계획을 변경하여, 당초 300병상 수준의 1,2차 진료 제공에서 500병상 수준의 병원으로 3차 진료도 포함하는 것으로 진료운영계획을 수정하였다. 그 결과 개원시까지 예상되는 기타투자비(의료기기투자비 및 개원 전 운영비)가 충남대학교 분원 건립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결과 보다 증액(303억원)해야 할 필요가 발생하였다.

총사업비가 10% 이상 변동될 경우 타당성재조사 대상이지만, 기타투자비 항목에 대하여는 총사업비 관리 D-Brain에 관리되는 항목이 아니므로 총사업비 관리대상이 아니므로 타당성재조사 대상은 아니며 기재부 총사업비관리지침 상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대상이다.²⁾

2) 「총사업비관리지침」

제49조의2(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9조제2항 각 호에 대하여 타당성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사업계획 재검토’를 2019년 7월 22일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요청하였으며, 사업계획 재검토는 2019년 8~10월 동안 진행될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사업계획 재검토’에서 검토 중인 사업계획 변경 및 예산 증액을 전제로 2020년 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예산안에서 예비타당성보다 증액 편성된 것은 충남대병원 분원 부착외 의료장비 도입 예산 47억원과 인건비 증액분 35억원이다.

[충남대학교 예타 기준 예산 및 2020년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예비타당성 기준	정부안
충남대학교병원 분원 건립		4,117	4,117
충남대학교병원 분원 의료장비 도입		1,711	1,711
충남대학교병원 분원 부착외 의료장비 도입		-	4,670
충남대학교병원 분원 전산시스템 구축비		1,750	1,750
충남대학교병원 분원 개원준비비	집기비품	3,408	3,408
	인건비	3,489	7,000
	소계	4,571	10,408
합 계		14,475	22,656

자료: 교육부

교육부는 2020년 예산안 심의 시 사업계획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조속히 완료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재조사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타당성 재조사 방식에 준하여 적정 사업규모,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 등을 검토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 재조사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적정 사업규모,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업의 경우 타당성 재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가. 현 황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¹⁾은 산업체 내에서 현장실습생의 실습지도 및 안전한 관리를 통해 내실 있는 현장실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의 현장실습지도·관리 및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 보다 182억원(791.3%) 증가한 205억원 규모로 편성되었다.

[2020년도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2,369	2,300	2,300	20,500	18,200	791.3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운영	2,369	2,300	2,300	20,000	17,700	769.6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사업 관리	0	0	0	500	500	순증

자료: 교육부

구체적인 사업 내역을 보면, 기업현장교사 수당이 2만개소 사업장에 대해 200억원이 지원되며, 기업현장교사 교육비 등에 5억원 소요되는 것으로 편성되었다.

김성은 예산분석관(sekim06@assembly.go.kr, 788-4634)

1) 코드: 일반회계 4151-302

[2020년도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사업 예산안 편성 내역]

-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운영 : 20,000백만원
 - 기업현장교사 수당 등 : 20,000백만원 = 20,000개소* × 50만원** × 2개월***
 - * 현장실습 선도기업 '20년 20,000개소까지 확대 목표
 - 선도기업 현황(개소) : ('18) 8,000 → ('19) 15,000 → ('20) 20,000
 - ** 기업현장교사 수당 월 40만원 + 교육훈련비 월 0~20만원(학생 1명 참여시 미지급, 2명 참여시 10만원, 3명 참여시 20만원) / 현장실습 운영 기업당 평균 2명 학생 참여
 - *** 현장실습 평균 운영 기간
-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사업관리 : 500백만원
 - 기업현장교사 교육비, 수용비 등 : 500백만원

나. 분석의견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한 기업현장교사 수당의 집행실적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2020년 교육부 이관 후 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므로 기업현장실습의 안전관리 및 수당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

2018년 직업계고 학생의 현장실습제도를 근로에서 학습중심으로 개편하면서 고용노동부는 2018년부터 학습중심 현장실습과 연계된 훈련과정(프로그램) 개설 및 학생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특성화고 현장훈련 지원사업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동 사업의 내용은 현장훈련 표준모델 개발, 기업현장교사 수당 지원, 컨설팅 지원으로 구성되며, 2020년에 기업현장교사 수당 지원²⁾이 교육부로 이관될 계획이다³⁾.

고용노동부가 특성화고 현장훈련 지원사업에서 추진한 기업현장교사 수당 지원은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3,000개 기업에 대해 30만원씩 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450개 기업에게 1억 8,500만원(집행률 20.6%)을 지원하는데 그쳤으며, 2019년 1,500개 기업에 대해 80만원(월 40만원, 2개월)씩 1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9월말 150개 기업이 신청하는데 그쳤다.

2) 교육부에서 선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서 특성화고 학생이 현장실습을 하는 경우 기업당 월 40만원(최대 2개월 80만원) 수당 지급

3) 다른 내역사업은 모두 종료된다.

[고용노동부 기업현장교사 수당 집행 실적 및 교육부 예산안]

(단위: 개소, 백만원)

	예산		집행		소관 부처
	기업수	예산	기업수	예산	
2018	3,000	900	450	185	고용노동부
2019	1,500	1,200	150개 신청	-	
2020(안)	20,000	20,000	-	-	교육부

주: 2019년 집행은 9월말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교육부

교육부는 2020년 예산안에서 고용노동부 사업에 비해 대폭 확대된 20,000개 기업에 대해 100만원(월 50만원, 2개월)씩 200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교육부는 기업현장교사 수당 지원의 이관 및 확대 필요성에 대해 그 동안 현장실습 참여기업 선정과 수당 지급 선정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복잡하고 기업의 부담이 이중으로 발생하여 신청 실적이 저조하였으나 교육부로 이관을 통해 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경우 20,000개 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기존 사업의 추진체계를 보면 현장실습 참여기업 선정은 교육부 소관이며 현장실습 수당 지원 기업 선정 및 지급은 고용노동부 소관이다. 각 기업은 현장실습 참여기업 선정 시 시·도교육청에 실습계획 등 서류제출 후 방문심사를 받고, 현장실습 참여기업으로 지정 후 운영 시 학교·교육청·공인노무사 방문점검 등을 받는다. 또한 고용노동부 사업 참여를 위해 별도의 사업신청서 및 훈련계획서를 작성하고 산업인력공단 방문점검도 필수로 받아야 하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이중 업무 부담이 있어 신청 실적이 저조하다고 파악하고 있다.

[기업현장교사 수당 지원 사업 추진 체계]

[~2019년]

[2020년~]

현장실습(교육부)		기업현장교사수당 (고용부)	현장실습(교육부)	
8~9월	현장실습프로그램 개발(학교,기업)		8~9월	현장실습프로그램개발(학교,기업)
	↓			↓
	기업심의(현장 실습운영위원회)			기업심의(현장실습운영위원회)
	↓			↓
	기업신청 (학교→교육청)			기업신청*(학교→교육청)
	↓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교육청)			서류심사및현장실사(교육청)
	↓			↓
	기업인정심의 (교육청)			기업인정심의(교육청)
	↓			↓
	기업인정(교육청)			기업인정(교육청)
10월~	현장실습운영 (학교,기업)	특성화고현장 훈련신청(기업)	10월~	현장실습운영 (학교,기업)
	↓	↓		↓
	현장실습지도점검 (학교,교육청,교육부)	심사 선정 및 모니터링 (한국산업인력공단)		현장실습지도점검 (학교,교육청,교육부)
		수당신청및지급 (기업한국산업인력공단)		수당신청 및 지급 (기업, 위탁기관)

자료: 교육부

그러나 주 단위 교육일지 작성, 기업현장교사 수당 관련 자료(기업현장교사 재직(경력)증명서, 임금 기업 통장사본 등) 제출 등의 기본적인 절차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기업현장교사 수당 지원의 집행실적을 대폭(2018년 450개 기업 지원 → 2019년 150개 기업 신청 → 2020년 20,000개 기업 지원)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절차 간소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위탁한 민간 전문가 단체(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수행하는 방문점검을 생략하고 교육청 및 공인노무사의 방문점검만을 실시할 경우 현장실습의 산업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2018년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고를 근로중심에서 학습중심으로 개편한 이유가 안전관리 강화에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산업안전 분야 전문가를 현장실습 점검단에 포함시키는 등 현장실습 제도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교육부는 사업의 집행 실적을 개선하는 것과 함께 기업 현장실습의 안전관리가 소홀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안내

	주 제 명	해당 페이지
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선급법인세, 적정 규모의 예산안 편성 필요	「2020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II」 pp.217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실제 예산집행과 다른 예산편성 시정 필요	「2020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II」 pp.221
3	사학진흥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대체경비, 적정 예산 편성 필요	「2020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II」 pp.224
4	한국장학재단이 수행하는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의 예산안 편성 및 성과지표의 적정성	「2020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II」 pp.228
5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업비에 계상된 무기직 인건비 비목 이관 필요	「2020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II」 pp.236

집 필

총괄 | 김 일 권 예산분석실장

심 의 | 서 세 옥 사업평가심의관
정 승 환 예산분석총괄과장
공 춘 택 산업예산분석과장
이 동 훈 사회예산분석과장
이 중 구 행정예산분석과장
전 용 수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신 은 호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박 흥 업 공공기관평가과장

작성 | 김 성 은 예산분석관

지원 | 이 지 은 행정실무원
김 승 미 자료분석지원요원

예산안분석시리즈 II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발간일	2019년 10월
발행인	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
편집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금양문화사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SBN 978-89-6073-215-5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19